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23년06월29일

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30증권투자자산탁제2호[채권혼합]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위험등급 기준 변경(투자대상→변동성)
  -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제2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영권, 김재정(책임운용역), <b>허익서(부책임용역)</b> 나.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영권, 김재정(책임운용역), <b>박민수(부책임용역)</b> 나.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2023년 05월 31일)</b>
2. 위험등급 기준 변경(투자대상→변동성):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b>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운용전략 변경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b> <b>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b> <b>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변경 이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b>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b>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6.34%이며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b> <b>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b> <b>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b>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주석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주석: <b>증권의 대여/차입 거래의 목적</b>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b>증권대차 거래 위험</b>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신설>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b>-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료의 또는 비용</b> <b>- 주식의 매매회전을 등</b> <b>-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b>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b>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b>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b>단,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b>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b>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lt;삭제&gt;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해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b> - <삭제>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	- <b>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b>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삭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b>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b> -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b>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b> <b>※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b>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3년05월31일)</b>

<b>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b>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b>최근 현황 갱신</b> 라. 운용자산 규모 - <b>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5월31일)</b>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3 위험등급 기준 변경(투자대상→변동성)

항목	정정전	정정후
<b>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b> <b>[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b>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영권, 김재정(책임운용역), <b>허익서(부책임운용역)</b>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영권, 김재정(책임운용역), <b>박민수(부책임운용역)</b> - <b>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 05월 31일)</b>
<b>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b>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b>최근 현황 갱신</b>
<b>3. 위험등급 기준 변경(투자대상→변동성): 표지</b>	신한자산운용(주)는 이투자신탁의 <b>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b> 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주)는 이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b> 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